



국토교통부

국 토 교 통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설신기술 지정증서 교부(제791호)

1. 귀사에서 신청하신 건설신기술 지정 건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신기술로 지정하고 불임과 같이 지정증서를 교부하오니, 본 신기술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다음해 2월 15일까지 실적관리업무 위탁기관인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02-516-249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건설신기술 지정증서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귀하 (우06711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19길 7 (서초동)), 강남화성(주) 귀하 (우0673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1길 12, 강남빌딩 9층 (서초동)), 엠유컨스(주) 귀하 (우073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3, 1027호, 맨하탄빌딩 (여의도동))

사무관대우 김대전 기술서기관 조기재 과장 전결 2016. 5. 31. 김희수

협조자

시행 기술정책과-3039 (2016. 5. 31.)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556 팩스번호 044-201-5551 / djtwo@molit.go.kr / 비공개(5,6)

국민 눈높이로 다가가는 열린 정부,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